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건설도시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, “제10조 (건설도시국) 건설도시국”을 “제10조 (건설교통국) 건설교통국”으로 한다.

제6조 보사환경국 사무 분장 중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상·하수도의 관리와 보급

제9조 지역경제국 사무 분장 중 “7.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”을 삭제하고, “8호”를 “7호”로 한다.

제10조 건설교통국의 사무 분장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7호의 “중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

1.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